

## **소규모합병을 위한 기준일 공고**

주식회사 오뚜기는 오뚜기물류서비스지주 주식회사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을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3조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3일을 기준일로 정하며, 기준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소규모합병 반대의 권리가 있음을 이에 공고합니다.

2022년 07월 18일

**주식회사 오뚜기**

**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흥안대로 405 (평촌동)**

**대표이사 황성만**

**명의개서대리인**

**주식회사 KB 국민은행장 이재근**